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김기덕,  
김영철, 김지향, 박승진,  
박철성, 서준오, 왕정순,  
이원형, 임만균, 한 신  
의원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추가함.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(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여지<sup>1)</sup>가 있으나, 확인결과 기시행<sup>2)</sup> 중이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 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

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행편 등을 고려하여 **비용의 일부를 보조**할 수 있다.

2) 2024~2025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(재난안전예방과-4578, 2024. 3. 27.) p.12~13 등